

의안번호	2200041
의 퇴 인	박정 의원
회 답 일	2024.06.10.
추계번호	24C0289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)	(제6항)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소지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그 아동에게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 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아동의 주소지가 농촌 또는 어촌지역인 경우 기존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2024년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, 동 법 제4조제5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,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있음¹⁾

1) 「아동수당법」 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)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.
 ②~④ 삭제
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.
 「아동수당법 시행령」 제2조(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) 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제5항에서 “대통령

※ 2024년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급여 예산 : 2,111,371백만원

2024년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 예산 : 2,888,544백만원

□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농·어촌 지역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추가될 수급권자 수와 지급금액을 현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워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
- 개정안에 대한 추계를 위해서는 추계기간 동안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 대한 예상 수급권자 수와 추가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
- 다만, 개정안에서 정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에 따른 농촌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어촌 지역의 수급권자 수에 대한 구체적 통계 정보가 부재함
 - － 개정안에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‘농촌’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‘어촌 지역’은 ‘읍·면’ 등의 지역이며, 이에 수급권자 수 추정을 위해서는 읍·면 단위의 각세별 장래인구 추정값이 필요함
 - － 다만, 통계청에 따르면 ‘장래인구추계’는 2024년 현재 시·도(2022~2052)단위까지 공표되고 있어²⁾ 추가 지급될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권자 추정에 필요한 ‘읍·면’ 단위 정보가 부재함
- 또한, 개정안은 추가 지급될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추가 지급액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1세 미만의 아동: 매월 100만원
2.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: 매월 50만원

2) 통계청에 따르면 시·군·구 단위는 2024년 말 발표할 예정이나 읍·면·동 단위는 예정된 실시계획이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